의 안 번 호

1431

【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3. 21.(수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3. 22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4. 16.(월)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반영한 7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 정비(안 제1조)
- 나. 불필요한 조항 삭제(안 제2조 및 제4조)
- 다.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정비 (안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
4. 근거법규

- 가.「국유재산법」제8조
- 나.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제15조
- 다.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
- 라. 「주차장법」제8조의2, 제21조의2
- 마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- O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,
- O 「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등 7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일괄개정 조례 목록

구분	조 례 명	소관부서	비고
제1조	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	문화관광실	p4
제2조	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	자치행정과	p5
제3조	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	"	p 5
제4조	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	평생교육과	p6
제5조	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	교통행정과	p6
제6조	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	66	р6
제7조	울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	공원녹지과	р7